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주민복지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「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 및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 범위 확대 : 사망일 1년 이전부터를 사망일 현재로 변경하여
지원범위 확대(안 제3조)
- 나. ‘영아등 화장’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제외에서는 삭제
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‘개장’을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제외에서는 삭제
(안 제3조, 제4조)
- 라.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및 지급기한의 명확화(안 제6조)
 - 신청기간
 - 현행 :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
 - 개정안 :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
 - 지급기한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- 마. 지원금액 기준 변경(안 제5조)

- 현 행 : 타 지역(전국)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%를 지급한다

- 개정안 :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%를 지급한다. 단,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.

바.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신설(안 제6조)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10.15.~2021.11.05.기간 중 의견없음

라. 성별 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해당없음

바. 기타 관련사항 : 해당없음

사.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 통과(2021.11.11.)

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2.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3.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
제4조제3호 중 “90일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존의 분묘를”을 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%를 지급한다. 단, 지원금 최고

액은 50만원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90일”을 “6개월”로, “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”을 “화장장사용료영수증, 개장신고증명서(개장유골의 경우)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신청인에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”를 “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청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장기·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의 이행으로 화장이 늦어진 경우
2. 천재지변, 질병,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
3. 그 밖에 제1호,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.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.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3.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
<p>제4조(지원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생략) 3.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	<p>제4조(지원제외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6개월 ----- ----- -----

4.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
5. 사태(死胎)·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
제5조(지원금액) ① (생략)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(전국)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%를 지급한다.

제6조(신청 및 지급방법)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말소자초본, 화장증명서,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, 신청인에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.

④ (생략)

4.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-----

<삭제>

제5조(지원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%를 지급한다. 단,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.

제6조(신청 및 지급방법) ① -----

----- 6개월 -----

----- 화장장사용료영수증, 개장신고증명서(개장유골의 경우)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-----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이 청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장기·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의 이행으로 화장이 늦어진 경우

2. 천재지변, 질병, 상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,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【별지 제1호서식】 <개정 2022. 1. 1.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주민복지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213